

직제규정

4-1-1

규정번호 4-1-1
제정일자 2010.10.1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53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직제에 관하여 우리대학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정원 및 사무분장) 각 직제의 정원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조(임기) 이 규정이 정하는 교원의 보직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2 장 교원 및 직원

제5조(총장 등) ① 우리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대학의 업무분장에 따라 2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사무직원으로 임용되는 자 포함)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6. 9. 2, 개정 2020.01.14)

③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변경 2016. 9. 2)

④ 사무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하되 각 직종의 직급별 정원은 법인정관 제112조의 [별표 4]에 의하며 행정 실·처·단·본부의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8.24., 2017.02.27., 2022.04.08., 2026.5.18., 항변경 2016. 9. 2,)

⑤ 조교는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변경 2016. 9. 2)

⑥ 교원 및 사무직원, 조교 외에 필요에 따라 강의교수, 겸임교원, 객원교수, 초빙교원, 명예교수, 강사와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04.26., 항변경 2016. 9. 2, 2019.07.30)

제 3 장 대학본부

제6조(대학본부) ① 대학본부에는 교목실, 기획실, 교무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사무처, 대학혁신본부, 평생교육본부, 국제교류본부를 둔다.(개정 2015.12.1., 2016.9.2., 2018.8.27., 2018.12.10., 2019.11.25., 2022.02.21., 2025.3.31., 2025.9.29.)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②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대학혁신본부장, 평생교육본부장 및 국제교류본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단, 기획실장과 사무처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개정 2015.06.15., 2015.12.01., 2015.12.03., 2016. 9. 2., 2018.08.27., 2018.12.10., 2019.11.25., 2022.02.21., 2025.9.29., 2025.12.1.)

③ 실·처·단·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실·처·단·본부에 부실·처·단·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처·단·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5.06.15., 2025.12.1.)

④ 교목실에는 교목과 선교지원팀 및 공동체성경읽기운영센터를 두며, 교목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하고,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4.7.24., 2026.2.6.)

⑤ 기획실에는 기획평가팀 및 예산감사팀을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2.01., 2015.12.03., 2017.02.27., 2018.08.27.)

⑥ 교무처에는 교무입학팀, 학사지원팀, 교육과정혁신팀, 학사학위운영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2.01., 2017.02.27., 2018.08.27., 2020.06.22., 2021.08.18., 2022.06.08., 2024.7.24.)

⑦ (개정 2015.12.01., 항변경 2016. 9. 2, 2017.02.27.)(항삭제 2018.08.27.)

⑧ 학생지원처에는 학생복지팀, 취·창업팀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AI융합진로지원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021.01.21., 2021.10.25., 2022.06.08., 2024.7.24., 2026.2.6.)

⑨ 산학협력처에는 산학협력팀, 산학AI융합지원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항변경 2016. 9. 2, 2017.02.27.)(개정 2018.08.27., 2018.12.10., 2021.08.18., 2026.2.6.)

⑩ 사무처에는 총무회계팀 및 구매시설팀을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⑪ 대학혁신본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혁신지원사업운영팀), AI·IR센터(AI·IR팀)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11.25., 개정 2022.02.21., 2026.2.6.)

⑫ 평생교육본부에는 평생교육팀, 성인학습지원센터, 원격평생교육센터, 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5.3.31.)

⑬ 국제교류본부에는 글로벌교육센터(글로벌교육팀), 유학생지원센터(유학생지원팀), 한국어교육센터(한국어교육팀)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5.9.29.)

제 7 조(직무대행·협조) ①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장 및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은 직무대행자를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지정한다.(개정 2016.3.1., 2018.08.27.,

2018.12.10)

③ 각 부서장은 그 소관 업무가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부·학과

제 8 조(학부·학과) ① 법인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학부 및 학과를 둔다.

② <삭제(2026.3.23.)>

1. <삭제(2024.7.24.)>

2. <삭제(2024.7.24.)>

3. <삭제(2024.7.24.)>

4. <삭제(2024.7.24.)>

5. <삭제(2024.7.24.)>

③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삭제(2017.7.14.)>

⑤ <삭제(2025.1.23.)>

⑥ 본과정 이외의 학과 및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 5 장 부속기관

제9조(부속기관) ① 학술정보원, 교수학습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상담센터, 인권/양성평등센터, 학보·방송국, 체육관, 예비군대대, 생활관을 둔다.(개정 2015.06.15., 2015.12.01., 2016. 9. 2, 2017.02.27., 2018.2.5., 2018.08.27., 2018.12.10., 2019.02.25., 2020.07.27., 2021.01.21., 2022.06.08., 2024.10.21., 2025.9.29)

② 학술정보원에는 학술정보팀 및 정보관리팀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025.12.1.)

③ 교수학습센터에는 교수학습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019.02.25., 2021.01.21., 2022.06.08)

④ (삭제 2018.08.27.)

⑤ (삭제 2015.12.01.)

⑥ 학보·방송국에는 주간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⑦ 체육관에는 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⑧ 예비군대대에는 대대장을 두며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2.5.)

⑨ 생활관에는 생활관운영팀을 두며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6.15., 2020.06.25.)

⑩ (신설 2018.12.10., 개정 2019.02.25)(삭제 2021.01.21.)

⑪ <삭제(2025.9.29.)>

⑫ 원격교육지원센터에는 원격교육지원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07.27.)

⑬ 상담센터에는 상담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1.01.21.)

⑭ 인권/양성평등센터에는 인권/양성평등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5.3.31.)

제 6 장 부속교육기관

제 10 조(명지유치원) ① 명지유치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직원은 일반직 및 기술직으로 하되, 각 직종의 직급별 정원은 법인정관 제112조의 [별표8]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04.08.)

제 11 조(평생교육원) <삭제(2025.3.31.)>

② <삭제(2025.3.31.)>

③ <삭제(2025.3.31.)>

④ <삭제(2025.3.31.)>

제 12 조(기타 부속교육기관) ① 기타 교육(공공)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특정시설이나 사업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기관장은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02.27.)

③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제 7 장 부설연구소 및 부설센터

제13조(부설연구소) <삭제(2026.2.6.)>

제14조(부설센터) ① 우리대학에 부설센터로 진로체험센터를 두되, 필요에 따라 학과 소속에 부설센터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학과 소속의 부설센터장은 해당 학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2014.06.09., 2016. 9. 2, 2017.06.20. 2018.08.26., 2021.01.21., 2022.06.08.,2025.3.31.,2025.9.29.)

② 각각의 부설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신설 2019.02.25.)(삭제 2021.01.21.)

제 8 장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제 15 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명지전문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02.27.)

③ 산학협력단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 9. 2)

제 16 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명지전문대학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개정 2024.7.24.)

② 학교기업에는 총괄교수 및 대표책임교수를 두며,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02.27.)

③ 총괄교수는 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학교기업의 인사 및 운영을 관장하고, 대표책임교수는 학교기업을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2.10.,2024.7.24)

④ 운영에 따른 하부조직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10.)

제 9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 17 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정관 제35조의2 및 학칙 제49조의5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4명, 직원 3명, 조교 1명, 학생 2명, 동문 및 기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3명(동문 1명, 학부모 1명, 지역사회 1명)으로 한다.(개정 2018.12.10.,2020.12.07.)

③ 교원평의원은 부교수 이상, 직원평의원은 6급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20.12.07.)

④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위원회

제18조(교무위원회) ① 우리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부총장·교목실장·기획실장·교무처장·산학협력처장·학생지원처장·사무처장·대학혁신본부장·평생교육본부장·국제교류본부장·학술정보원장·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5.12.1.,2018.08.27.,2018.12.10.,2019.11.25.,2022.2.21.,2025.3.31.,2026.5.18.)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대학특성화전략위원회) ① 대학에 총장 직속으로 대학특성화전략위원회를 둔다.(조 신설 2018.08.27., 개정 2026.5.18., 2026.7.20.)

② 대학특성화전략위원회는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6.5.18., 2026.7.20.)

③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5.18., 2026.7.20.)

④ 대학특성화전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6.5.18., 개정 2026.7.20.)

제 19 조(기타 위원회) ① 우리대학의 주요 업무를 의결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기타 조직

제 20 조(보건실) ① 우리대학 학생지원처에 보건실을 둔다.

② 보건실 직원은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제 20 조의 2 (삭제)

제21조(기타조직) 총장은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②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학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①항의 “교학부 학생서비스팀”을 “학생지원처 학생서비스팀”으로 한다.

<2>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교학부장”을 각각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제8조의 “기획홍보팀 기획홍보팀장”을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3> 시설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교학부장”을 각각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제7조의 “기획홍보팀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4> 대학평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호, 4호의 “학생처 학생팀”을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으로 하고, 5호의 “기획홍보팀”을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5> 공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4조, 10조, 13조의 “기획홍보팀,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 학생처 학생팀,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을 “기획·예산팀,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6> 대학자체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 12조, 13조의 “기획홍보팀”을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7>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예산감사팀장, 학생처장”을 “기획·예산팀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하고, 8조의 “예산감사팀”을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8> 취업활성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취업마케팅실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6조 ②항의 “취업마케팅팀장”을 “취업지원팀장”으로 한다.

<9>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산학협력처장” “취업마케팅실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별표3의 “디자인 및 예술체육학부”를 “예술·건강학부”로 한다.

<10>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②항, 14조 ②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취업마케팅실장”을 “산학협력처장, 학생지

원처장”으로 하고, “교학부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11>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3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을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12>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을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13>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을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14> 개인정보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②항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5> 교원산업체연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6>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③항, 8조 ②항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7> 물품구매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3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8> 불용품처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②항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9> 전공스터디그룹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을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20> 연구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①항, 7조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11조, 12조 ①항, 13조 ③항, 25조 ①항, 38조 ②항, 39조의 “산학협력처,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장”을 각각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21> 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9조, 11조, 별표1의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을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교학부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22>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②항의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을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제3조 ③항, 7조, 8조, 13조의 “학생처장, 학생팀장”을 “학생지원처장, 복지팀장”으로 한다.

<23>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항의 “학생팀”을 “학생복지팀”으로 하고, 13조 ②항의 “학생처장, 교학부장”을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하며, 17조 ①항의 “학생팀장”을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24> 외래강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3호의 “디자인 및 예술체육학부”를 “예술·건강학부”로 한다.

<25> 졸업인증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제6조 ②항의 “학생처장, 정보공학부장”을 “학생지원처장, 공학·정보학부장”으로 한다.

<26> 전과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④항의 “디자인학부 및 예술체육학부”를 “예술·건강학부”로 한다.

<27>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③항의 “학생처장”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28> 명예학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②항의 “학생처장”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29> 학생준칙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13조의 “학생처장”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30> 학교기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학생처장”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31>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을 “상담센터규정”으로 하고, 제1조의 “학생생활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 제②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②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로 변경하고, 제4조제18호, 제5조, 제5조제11호, 제5조의2, 제5조의2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교무팀”을 “교무부”로 변경하고, 제6조의제20호,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 교육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팀”을 “제6조 교육개발센터”로 변경하고, 제7조의2제8호,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의4 NCS지원센터 NCS지원팀은”을 “제7조 NCS지원센터는”으로 변경한다.

“제13조의 입학팀”을 “입학홍보부”로 변경하고, 제13조제8호,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 학생복지팀은”을 “제9조 학생지원부는”으로 변경하고, 제10조제16호,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산학협력팀은”을 “제10조 산학취업부는”으로 변경하고, 제8조제21호,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총무팀은”을 “총무부는”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32호,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 평생교육팀은”을 “제12조 평생교육본부는”으로 변경하고, “제15조”는 “제13조”로,

“제16조”는 “제14조”로, “제17조”는 “제15조”로, “제18조”는 “제16조”로 “제19조”는 “제17조”로 변경하며, 제15조를 신설한다.

<2>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전결사항(행정부서)의 “기획예산팀, 평가감사팀 및 대외국제협력팀”을 “기획부”로, “교무팀 및 학적팀”을 “교무부”로, “교수학습개발팀 및 기초역량개발팀”을 “교육개발센터”로, “NCS지원팀”을 “NCS지원센터”로, “산학협력팀 및 취업지원팀”을 “산학취업부”로, “학생복지팀 및 학생서비스팀”을 “학생지원부”로, “입학팀 및 홍보팀”을 “입학홍보부”로, “총무팀 및 회계팀”을 “총무부”로, “학술정보팀”을 “도서관”으로, “정보관리팀”을 “정보관리센터”로, “평생교육팀”을 “평생교육원”으로, “팀장”을 “부장(담당관)”으로 한다.

<3>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로, “기획·예산팀장”은 “기획부장”으로 한다.

<4> 시설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기획·예산팀장”을 “기획부장”으로 한다.

<5> 대학평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의 “교무팀”을 “교무부”로, 제2호의 “총무팀”을 “총무부”로, 제3호 및 제4호의 “학생복지팀”을 “학생지원부”로, 제5호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로 한다.

<6>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기획·예산팀장”을 “기획부장”으로, 제8조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로 한다.

<7>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로 한다.

<8> 규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의 “기획·예산팀장”을 “기획부장”으로, “팀장”을 “부장”으로, 제9조제1항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으로, “기획·예산팀장”을 “기획부장”으로 한다.

<9> 공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호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으로, 제4조제2호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제3호 “산학취업팀”을 “산학취업부”로, 제4호의 “학생복지팀”을 “학생지원부”로, 제5호의 “총무팀”을 “총무부”로 제9조제3항의 “총무팀”을 “총무부”로, 제13조의 “기획·예산팀”을 “기획부”로 한다.

<10>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기획·예산팀”은 “기획부”로, “기획·예산팀장”은 “기획부장”으로 한다.

<11>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기획예산팀”은 “기획부”로 한다.

<12> 교육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교육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팀”은 “교육개발센터”로, 제2항의 “교육개발센터 기초역량개발팀”은 “교육개발센터”로, 제3항의 “NCS지원센터 NCS지원팀”을 “NCS지원센터”

로, 제4항의 “평가감사팀”을 “기획부”로 한다.

<13>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평가감사팀”을 “기획부”로 한다.

<14> 대학자체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의 “평가·감사팀”을 “기획부”로 한다.

<15>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팀장”을 “부장(담당관)”으로 한다.

<16> 발전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대외·국제협력팀”을 “기획부”로 한다.

<17> 학생국외유학및연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대외·국제협력팀”을 “기획부”로 한다.

<18> 생활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대외·국제협력팀”을 “국제교류원”으로 한다.

<19> 한국어교육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대외·국제협력팀”을 “국제교류원”으로 한다.

<20>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교무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21> 교수업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교무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22> 학위검증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교무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23>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교무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24>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6제2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25> 학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제7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31조제2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제14조제2항, 제14조2제1항의 “기초역량개발팀”을 “교육개발센터”로, 제28조제1항의 “학생서비스팀”을 “학생지원부”로 한다.

<26>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학적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27>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교육업적평가기준]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28>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강의전임교원 재임용 평가표]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29>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산학협력중점교원 재임용 평가표]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로 한다.

<30> 전공스터디그룹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31>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제2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32> 직업기초역량강화를위한인증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기초역량개발팀”을 “교육개발센터”로,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제3조제3항의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로 한다.

<33> 전과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34>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제7조의 “기초역량개발팀”을 “교육개발센터”로 한다.

<35> 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36>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학생복지팀장”을 “학생지원부장”으로, 제9조제1항의 “학적팀”을 “교무부”로 한다.

<37> 교육개발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38> NCS기반직무능력성취도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NCS지원센터 NCS지원팀”을 “NCS지원센터”로, 제3조제2항의 “교육개발센터 기초역량개발팀”을 “교육개발센터”로 한다.

<39> NCS지원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40>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로, “산학협력팀장”을 “산학취업부장”으로 한다.

<41> 연구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제3항, 제25조제1항의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로, 제11조의 “산학협력팀장”을 “산학취업부장”으로 한다.

<42> 검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로 한다.

<43> 실험실습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로 한다.

<44> 현장실습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로 한다.

<45> 가족회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의 “산학협력팀”을 “산학취업부”으로 한다.

<46> 취업활성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취업지원팀장”을 “산학취업부장”으로 한다.

<47> 명지인재양성시스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취업지원팀장”을 “산학취업부장”으로 한다.

<48> 사회봉사활동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의 “학생복지팀”을 “학생지원부”로 한다.

<49> 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의 “학생복지팀”을 “학생지원부”로 한다.

<50>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학생복지팀”을 “학생지원부”로, 제17조제1항의 “학생복지팀장”을 “학생지원부장”으로 한다.

<51> 일반직원교육·봉사실적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총무팀”을 “총무부”로 한다.

<52>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31조제2항의 “총무팀”을 “총무부”로 한다.

<53> 그룹웨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교무팀”을 “교무부”로, “총무팀”을 “총무부”로 한다.

<54> 일반직원교육·봉사평정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총무팀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55> 계약직원인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총무팀장”을 “총무부장”으로, [별표2. 계약직원 근무평정]의 “팀장”을 “부장·담당관”으로 “총무침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56> 교직원명예퇴직에관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교무팀”을 “교무부”로, “총무팀”을 “총무부”로 한다.

<57> 당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의 “총무팀장”을 “총무부장”로, 제7조제13항의 “총무팀”을 “총무부”로, 제9조제2항의 “총무팀”을 “총무부”로 한다.

<58> 경조예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총무부”을 “총무부”로 한다.

<59> 직원국외여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의 “총무팀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60> 구매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7조제2항의 “총부팀”을 “총무부”로 한다.

<61> 불용품처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총부팀”을 “총무부”로 한다.

<62> 게스트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총부팀”을 “총무부”로 한다.

<63>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의 “총부팀”을 “총무부”로, 제6조제3항, 제10조의 “총부팀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64> CCTV설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총부팀장”을 “총무부장”으로, “총부팀”을 “총무부”로 한다.

<65>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총부팀”을 “총무부”로, 제6조제10항의 “총부팀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66> 친화회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제10조제5항의 “총부팀장”을 “총무부장”으로, 제8조제4호의 “총부팀”을 “총무부”로, 제13조제1항의 “팀장”을 “부장(담당관)”으로 한다.

<67> 노사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총부팀”을 “총무부”로 한다.

<68> 평생교육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평생교육팀”을 삭제하고, 제25조제2항의 “회계팀”을 “총부팀”으로 한다.

<69>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입학팀”을 “입학홍보부”로 한다.

<70> 도서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정보관리센터실장”을 “정보관리센터장”으로, 제6조제5항의 “학술정보팀장”을 “도서 담당관”으로 한다.

<71>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정보관리센터실장”을 “정보관리센터장”으로, 제9조의 “정보관리팀장”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한다.

<72> 정보보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정보관리센터실장”을 “정보관리센터장”으로 한다.

<73> 개인정보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제1호의 “정보관리센터실장”을 “정보관리센터장”으로, “정보관리센터팀장”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제10항을 삭제한다.

<74> 정보관리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의 “실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75> 정보통신망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항,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의 “정보관리센터실장”을 “정보관리센터장”으로 한다.

<76>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정보관리센터실장”을 “정보관리센터장”으로 한다.

<77> 정보관리센터운영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 “실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78> 교직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22조의 “팀장”을 “부장(담당관)”으로 한다.

<79> 시간외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팀장”을 “부장(담당관)”으로 한다.

<80> 교원국외여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교무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81> 교직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부장”을 “부속기관장”으로, “행정팀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82> 특별과정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의 “담당업무 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83> 졸업학기(조기)취업자학점인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의 “담당업무 팀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를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14조의 “취업진로지원팀”을 “진로취업지원팀”로 변경한다.

<2>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별지’의 “교육지원팀”을 “교육혁신지원팀”으로, “취업진로지원팀”을 “진로취업지원팀”으로 “상담센터”를 “상담지원팀”으로 변경한다.

<3>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부서기호(별표7)부’의 “교육지원팀(교육)”을 “교육혁신지원팀(교육혁신)”으로, “취업진로지원팀(취업)”을 “진로취업지원팀(진로취업)”으로 “상담센터(상담)”를 “상담지원팀(상담)”으로 변경한다.

제16조의 “부설연구소”를 “부설연구소 및 부설센터”로, “연구소별”을 “연구소(센터)별”로 변경한다.

<4>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를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14조의 “취업진로지원팀”을 “진로취업지원팀”로 변경한다.

<별표 1>, <별표 3>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를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5>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를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6>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장”을 “교육혁신지원센터장”으로,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을 “진로취업지원센터장”로 변경한다.

<7> 교육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항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를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8> NCS기반직무능력성취도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를 “교육혁신지원센터”로, 제4조제2항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장”을 “교육혁신지원센터장”으로 변경한다.

<9> 교육개발·NCS지원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개발·NCS지원센터운영규정” 명칭을 “교육혁신지원센터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제1조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을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10> 취업활성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을 “진로취업지원센터장”으로 변경한다.

<11> 명지인재양성시스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의 “취업진로지원센터”를 “진로취업지원센터”로,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을 “진로취업지원센터장”으로 변경한다.

<12> 취업진로지원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취업진로지원센터운영규정” 명칭을 “진로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취업진로지원센터”를 “진로취업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의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을 “진로취업지원센터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8조제2항의 학과 명칭변경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3항은 2020년 7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6항, 제6조제8항,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4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학사내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2> 취업활성화위원회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 · 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3> 교수역량강화위원회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제4조제1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4> 학생역량강화위원회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제4조제1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5> 진로취 · 창업관리위원회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변경한다.

<6> 사무분장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변경한다.

제13장 및 제14조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교육혁신지원팀"을 "교수학습팀"으로 변경한다.

제5조의4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7> 위임전결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진로취업지원팀"을 "진로취 · 창업팀"으로 변경한다.

[별지]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교육혁신지원팀"을 "교수학습팀"으로 변경한다.

[별지]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8>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진로취업지원팀"을 "진로취 · 창업팀"으로 변경한다.

[별표7]의 "교육혁신지원팀"을 "교수학습팀"으로 변경한다.

[별표7]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9>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변경한다.

제9조제9호 및 [평점산정기준]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변경한다.

<10>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점산정기준]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변경한다.

<11>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가산정기준]의 "진로취업지원팀"을 "진로취 · 창업팀"으로 변경한다.

<12>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별표1]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 · 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별표1]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제2조제3항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13> 교육과정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변경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4항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14> 교육품질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변경한다.

<15> 교수학습센터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제5조제3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16> 글로벌현장학습학점인정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변경한다.

<17> 오프캠퍼스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 · 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18> 학생역량강화를위한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제4조제7호의 "진로취업지원팀"을 "진로취 · 창업팀"으로, 제7조제3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 · 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제4조제6호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교육혁신지원팀"을 "교수학습팀"으로, 제7조제3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19> 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의 "기초창의교양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다.

<20> 진로지도교수제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창업센터"로, 제6조제6호의 "진로취업지원팀"을 "진로취·창업팀"으로,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제6조제3호 및 제6조제5호의 "교육혁신지원팀"을 "교수학습팀"으로 변경한다.

<21> 학생진로·심리상담통합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제3조제2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22> 진로·취업동아리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5호,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창업센터"로 변경한다.

<23> 진로취·창업센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및 제1조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창업센터"로, 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4호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24> 산학협력단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교수학습센터장"으로 변경한다.

<25> 캠퍼스타운사업단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3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4항·제6항·제8항, 제8조제2항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1항)

부 칙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적용하되,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5항, 제11조제4항, 별표1)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14항, 제14조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제6조제1항·제12항, 제11조, 제18조제2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6조제1항·제12항, 제9조제14항, 제11조, 제14조, 제18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13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제11항, 제14조제1항, 제21조)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13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제11항, 제14조제1항, 제21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4항·제8항·제9항·제11항, 제13조)

부 칙<별표1삭제>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명지전문대학 규정 / 4-1-1 직제규정

[별표1] (제8조제2항 학부·학과 관련)] (신설 2024.7.24., 개정 2025.1.23., 삭제 2026.3.23.)